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1월 1일

국 무 총 리 김 향 식

국 무 위 원
기 획 재 정 부 관 박 재 완

●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특수관계자는”을 “특수관계인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을 “분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분배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액면가액”을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 중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begin{array}{l} \text{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 \text{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 \text{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 \text{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 \text{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end{array} \times \frac{1}{10} \times \begin{array}{l} \text{2012년 1월 1일 이후의} \\ \text{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 \text{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 \text{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 \text{이를 1개월로 본다)} \end{array} \times 3$$

제25조제1항 단서 중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를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5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54조의2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5조제2항 중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개시일”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제158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8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제86조제3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제158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체비지(替費地)”를 “보류지(保留地)”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을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96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확정신고의무자”를 각각 “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19조제12호자목 중 ““국외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각각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2조 단서 중 “제51조의2제3항”을 “제5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4조 단서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5조 단서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제13항 중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56조의4제1항 본문 중 “제156조 및 제156조의3”을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으로,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를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제156조의5제1항 중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로 한다.

제15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4절(제158조 및 제159조)을 삭제한다.

제160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을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6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을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를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제170조제5호 중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2012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나. 불법 사행산업 참여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 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안 제25조제1항)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